

**투자위험등급:
5 등급
[매우낮은위험]**

하나 UBS 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 1 호)[국공채]**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 1 호)[국공채]**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 1 호)[국공채]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하나 UBS 자산운용(주)
 3. 판 매 회 사 : 판매회사 영업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10년 11월 10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한 날 : **2010년 11월 11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 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모집가능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kofia.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판매회사
-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 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제 1 부.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1. 명칭
- 2. 모집예정기간
- 3. 모집예정금액
- 4. 펀드존속기간
- 5. 분류
- 6. 집합투자업자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 1. 주요 투자대상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투자목적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3. 수익구조
- 4. 주요 투자위험
-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6. 운용전문인력
- 7.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 (1) 연평균 수익률
 - (2) 연도별 수익률

제 3 부. 매입 환매 관련 정보

- 1. 수수료 및 보수
 -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2. 과세
-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 환매 절차
 - (1) 기준가격 산정
 - (2) 매입 및 환매 절차
- 4. 전환절차 및 방법
- 5. 계약의 이전

제 4 부. 요약 재무정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이 투자설명서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요약한 것에 불과하여 정식 투자설명서의 표현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펀드코드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투자신탁(제 1 호)[국공채]	31435

2. 모집예정기간

추가형으로 모집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 조좌

이 투자신탁은 10 조좌까지 모집(판매)가 가능하며, 1 좌 단위로 모집(판매)합니다. 단 모집(판매)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5. 분류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채권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전환형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펀드명	구분	내용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	주요투자대상	주식 : 60%이상, 채권 : 40%이하
	주요투자목적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

투자신탁(제 1 호)[주식]		인 자본증식 추구
	주요투자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에 주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 단, 필요 시 제한적으로 자산배분전략 병행 • Bottom-up Approach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ttom-up Approach에 보다 중심을 둔 운용 추구 - 장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주력하면서 필요 시 시장테마 등에 대응한 단기매매도 병행 • 리서치팀과의 연계 강화로 조직적 운용역량 결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니저의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 최소화 - In-house 리서치팀과의 긴밀한 연계로 적극적 투자유망종목 발굴
	주요투자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주식투자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등
	기타유의사항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상품으로써 시장 변동성이 큰 주식에의 투자가 60% 이상 투자하므로 5 등급 중 1 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2009.4.13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 투자신탁(제 1 호)[주식혼합]	주요투자대상	주식 : 60%이하, 채권 : 50%이하
	주요투자목적	투자신탁재산의 60% 이하를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 추구하고,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잔여 신탁재산은 채권에 50%이하, 어음에 40%이하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유동성 확보 및 이자수익을 추구
	주요투자전략	<p>[주식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에 주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트폴리오 전략에 주력하면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 - 단, 필요 시 제한적으로 자산배분전략 병행 • Bottom-up Approach에 중심을 둔 장기안정적 운용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ttom-up Approach에 보다 중심을 둔 운용 추구 - 장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주력하면서 필요 시 시장테마 등에 대응한 단기매매도 병행 • 리서치팀과의 연계 강화로 조직적 운용역량 결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니저의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 최소화 - In-house 리서치팀과의 긴밀한 연계로 적극적 투자유망종목 발굴 <p>[채권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포트폴리오는 초기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구성 • 기본 포트폴리오 구축 후, 금리 변동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p>방향성(Duration) 전략과 섹터전략 시행을 통한 추가 수익 창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수익 기회 탐색으로 Relative Value Trading 전략 시행
	주요투자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주식투자위험, 채권투자위험, 파생상품 투자위험 등
	기타유의사항	자산총액의 60% 이하를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상품으로써 시장 변동성이 큰 주식에의 투자가 60% 이하 투자하므로 5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2009.4.13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UBS 인 Best 연금 증권 투자신탁(제 1 호)[채권]	주요투자대상	채권 : 60%이상, 어음 : 40%이하
	주요투자목적	신탁재산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장기적립식 투자 상품이라는 펀드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만기 매칭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하여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 노출 자산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주요투자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포트폴리오는 초기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구성 • 기본 포트폴리오 구축 후, 금리 변동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방향성(Duration) 전략과 섹터전략 시행을 통한 추가 수익 창출 • 추가수익 기회 탐색으로 Relative Value Trading 전략 시행
	주요투자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채권투자위험, 파생상품 투자위험 등
	기타유의사항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으로써 이자소득을 추구하는 채권형 실적배당상품으로 5 등급중 4 등급에 해당되는 낮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2009.4.13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하나 UBS 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 빌딩 (02-3771-7800)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집합투자기구의 주요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채권	60%이상 다만, 주식관련사채는 40% 이하, 사모사채권에의 투자 3%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및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인 사모사채권을 포함하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함)
2.국공채	50%이상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3.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인 것)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를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 및 추가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 기본운용방안

- 기본 포트폴리오는 초기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구성
- 기본 포트폴리오 구축 후, 금리 변동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방향성(Duration) 전략과 섹터 전략 시행을 통한 추가 수익 창출
- 추가수익 기회 탐색으로 Relative Value Trading 전략 시행

■ 운용전략 구성(안)

운용전략	세부내용
Duration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인분석을 통한 방향성 탐색과 Duration전략 시행 • 시장 Overshooting 발생에 따른 추자기회 발생시 탄력적인 시장대응
Sector Allo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더멘탈, 채권수급, 산업분석을 통해 최적의 Sector Allocation 실행
Relative Value Investment (Yield Enhanc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채권간 상대가치 • Yield Curve Tra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lope Analysis, Shoulder & Rolling Effect, YC Riding
Security Sele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상승에 기대되는 종목 발굴 • 동일 만기/동급 대비 저 평가 종목 위주 편입

(2) 비교지수 : (KIS 종합채권지수 잔존만기 1년이하 통안 60%+회사채 30%+call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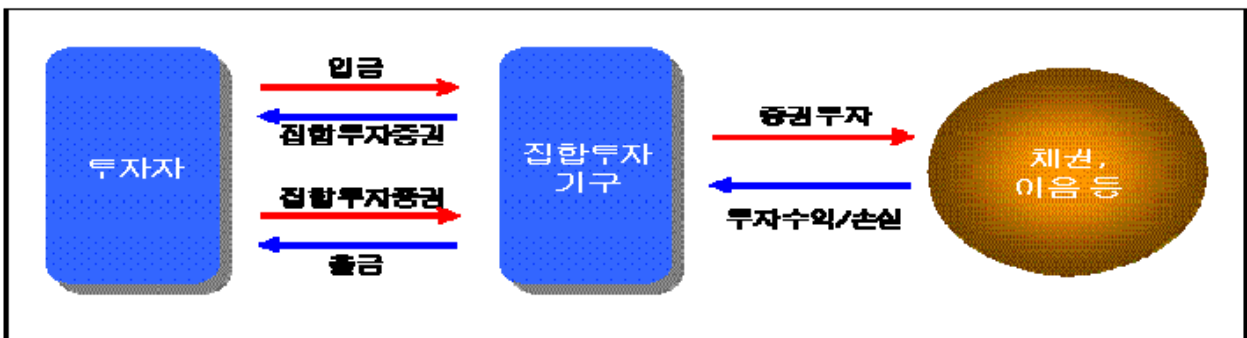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KIS 종합채권지수 잔존만기 1년이하 통안 60%+회사채 30%+call 1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의 비교지수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3) 위험관리

- 금리변동위험 관리방안
 - Top-down 및 Bottom-up 을 병행한 리서치 활동
 - 금리 방향성에 의존한 잦은 듀레이션(Duration) 대응 최소화
- 신용위험 관리방안
 - 산업별/발행기업별 분산투자로 신용위험 최소화
 - 내부 신용위험 관리 프로세스와 전문인력(Credit Analyst)을 통한 신용위험 관리
- 유동성위험 관리방안
 - 투자자금의 만기를 감안한 자산 편입/운용으로 펀드내 적정 유동성 확보에 노력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국공채에 5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안정적인 채권, 우량 CP 등에 투자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재산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당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투자수익/손실)이 결정됩니다.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채산을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투자적격등급(BBB-) 이상의 채권 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발행사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거나, 부도 등의 신용사건(Credit Event)이 발생할 경우 채무증권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환금성 제약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채권 등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행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무증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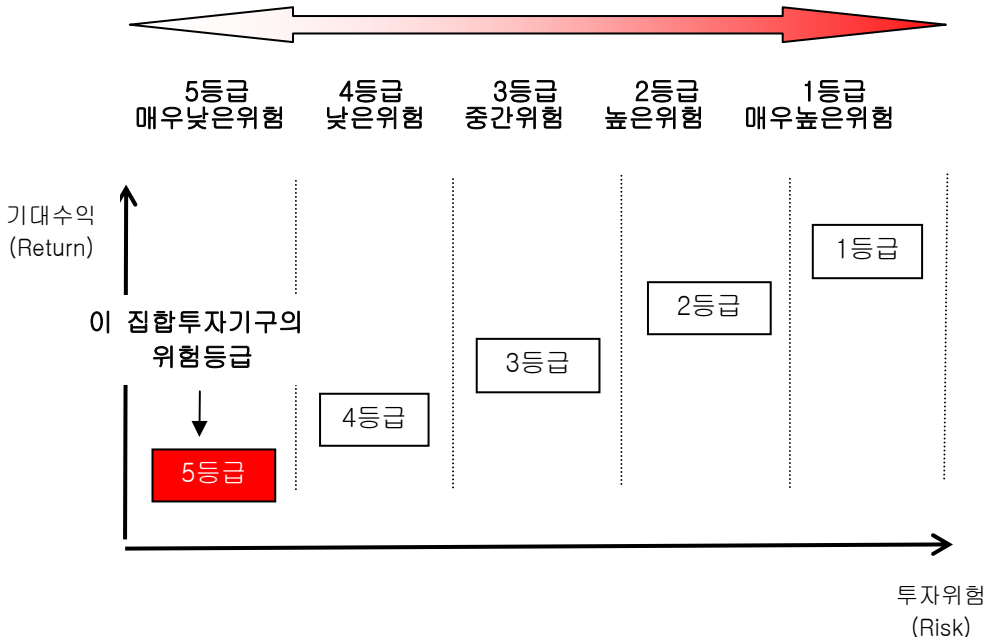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채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채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5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 낮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투자위험이 적은 대신 기대수익도 낮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하는 장기 투자자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세제혜택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개요 및 펀드예시(주)]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30% 이상인 금융공학형집합투자기구 분산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 분산요건을 충족하되,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자산에 최대 5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0%이상 -30% 미만인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구 분산요건을 충족하되,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 담보있는 대출 또는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부동산 등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자산에 최대 50% 미만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0%이상 -10% 미만인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구 담보있는 대출 또는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등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며, 투자적격등급(BBB- 이상) 채권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차익거래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국공채 전용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UBS자산운용주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 또는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운용전문인력(2010.11.1 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공경일	1966	부장	10 개	9,174 억	-서울대대학원 -채권운용 8년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추이 (세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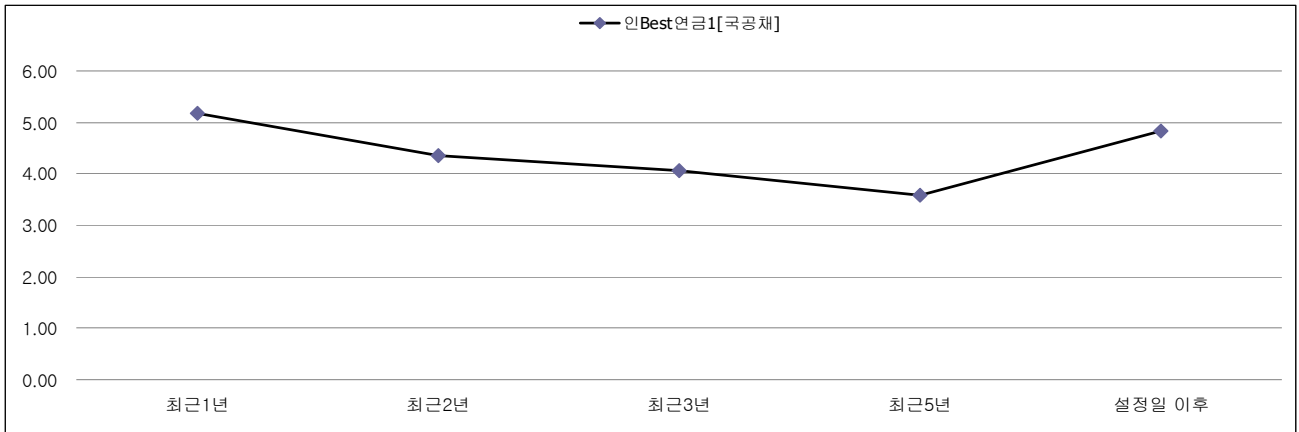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평균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1) 비교지수: (KIS 종합채권지수 잔존만기 1년이하 통안 60%+회사채 30%+call 10%)

주 2)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준일 현재(2009년 8월 1일)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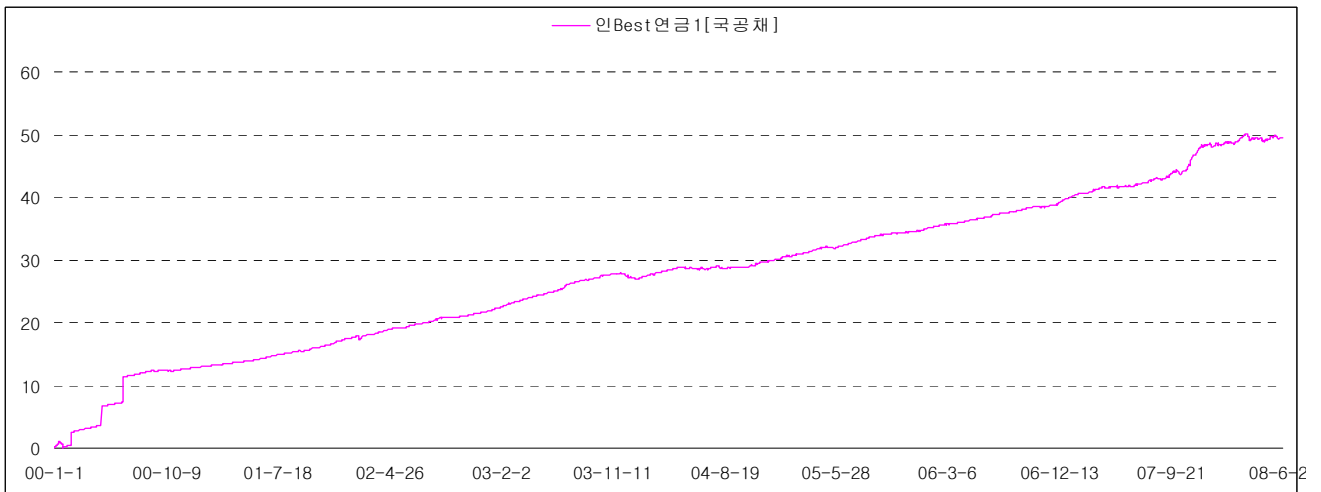
가. 연평균수익률 (기준일: 2009년 8월 1일, 단위: %)

연도	최근1년 2008.08.02 ~ 2009.08.01	최근2년 2007.08.02 ~ 2008.08.01	최근3년 2006.08.02 ~ 2007.08.01	최근5년 2005.08.02 ~ 2006.08.01	설정일 이후 2004.08.02 ~ 2005.08.01
인Best연금1[국공채]	5.17	4.36	4.06	3.58	4.84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기준일: 2009년 8월 1일, 단위: %)

연도	최근1년차 2008.08.02 ~ 2009.08.01	최근2년차 2007.08.02 ~ 2008.08.01	최근3년차 2006.08.02 ~ 2007.08.01	최근4년차 2005.08.02 ~ 2006.08.01	최근5년차 2004.08.02 ~ 2005.08.01
인Best연금1[국공채]	5.17	3.55	3.47	3.19	2.56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	------	------

선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후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전환/이전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해지가산세 (5년 이내)	매년 불입한 금액 (300만원한도)의 누계액 * 2.2% (주민세포함)	해지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연간, %)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0.295%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700%	
신탁업자보수	0.040%	
일반사무관리보수	0.005%	
기타비용	0.013%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1.053%	-
증권 거래비용	0.005%	사유발생시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보수·비용 (원)	107,945	340,295	596,462	1,357,715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

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은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나. 세제관련 사항 - **연금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1) 과세방안

- 연금수령액 중 기초소득공제 받은 금액(연금300만원 한도)과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으로 5%를 과세합니다.
- 연금저축투자자가 중도해지하거나 연금이외의 방법으로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20%를 과세합니다.

- 가입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시 불입금액(연 300만원 한도)에 대하여 2.2%(주민세 포함) 해지가산세를 부과합니다.

(2) 연금수령시 과세방법

- 불입액은 연간 1,200만원까지 가능하나 소득공제는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만 허용됩니다. 다만, 당해 연도의 불입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불입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연금수령시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총연금 수령액의 구성 요소>

이 자 ①	이 자 ②
불입연금 ③ (연 300만원)	불입연금 ④ (불입금 중 연 300만원 초과금액)

- 이자소득 부분(①,②)은 전액과세대상
- 매년 소득공제받은 연간 300만원 이내 불입액(③)은 한번도 과세대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연금 수령시 이자부분과 합하여 과세대상
- 연 30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부분 (④)은 이미 불입당시에 과세된 소득 (근로소득에서 과세된 소득으로 본다)이므로 이는 수령시 과세대상에서 제외

(3) 연금투자신탁의 중도해약시 과세 방법

- 중도해지에 따른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되면(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포함) 일시금 수령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1 - (실제 소득 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 다만,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산식] $\text{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times [1 - (\text{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text{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 해지가산세 :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2%의 해지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1) 저축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함

-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 저축자의 해외이주/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중도해지에 따른 소득세(연금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세제우대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니 세제 혜택에 대해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 가입자격 : 만 18세 이상
- 가입한도 : 매월 100만원 또는 분기 300만원내
- 가입한도 : 1인 다수 금융기관 또는 1금융기관내 다수 통장 개설 가능
- 종목전환 및 투자신탁계약의 이전 :
 - 종목전환 : 수익증권을 최초로 매입한 날로부터 매년 4회 전환 (전환수수료 없음)
 - 투자신탁계약의 이전 :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 다른 금융기관으로 투자신탁계약의 이전을 할 수 있음(이전수수료 없음)
- 세제혜택
 - 혜택조건 : 10년이상 적립(최소 만55세이상 적립)
 - 소득공제 : 당해연도 불입액의 100%(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5%)
- 중도해지
 - 연금이외의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으로 20%로 과세
 - 가입후 5년내 중도해지 시 불입금의 2%(연300만원 한도)의 해지가산세 부과
- ※ 소득공제한도는 당해 불입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 등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위의 세제우대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및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가. 기준가격 산정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서류공시] 판매회사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합니다.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매입 및 환매절차

(1) 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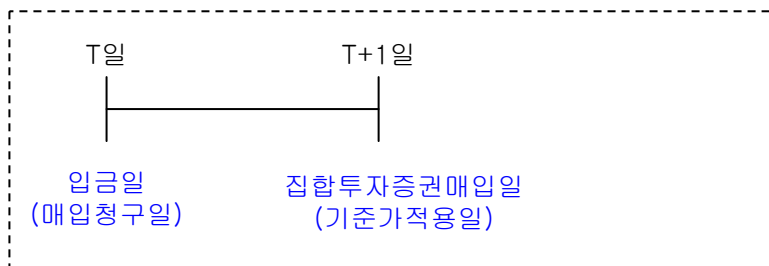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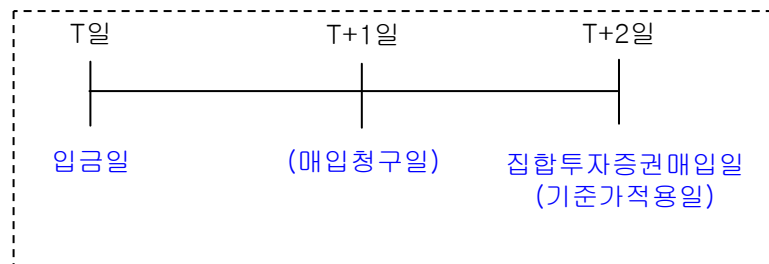
-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오후 5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2)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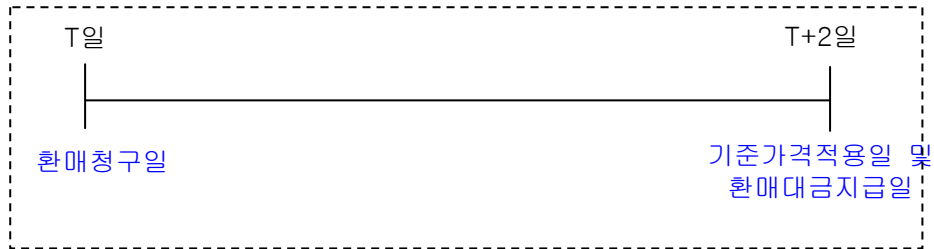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 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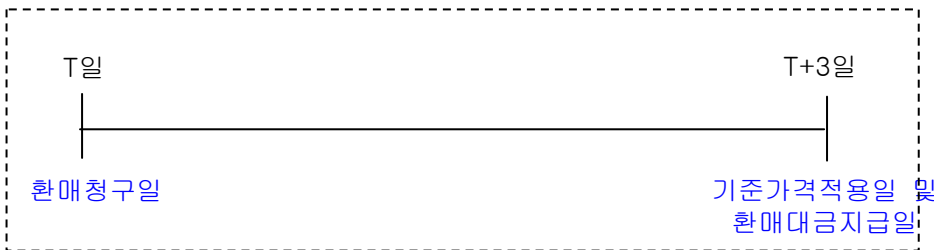
-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오후 5시 경과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4. 전환절차 및 방법

가. 전환 절차, 방법 및 전환시 기준가격

- 수익자는 투자기간중에 이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최초로 매입한 날로부터 매년 4회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내에서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하나UBS 인Best 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국공채]
 - 2) 하나UBS 인Best 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
 - 3) 하나UBS 인Best 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혼합]
 - 4) 하나UBS 인Best 연금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 위에서 열거한 투자신탁 이외의 다른 투자신탁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계약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약관의 변경의 방법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연금증권[국공채] 또는 연금증권투자신탁[채권]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수익자가 연금증권[주식혼합] 또는 연금증권투자신탁[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5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5시 경과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 1) 연금증권[국공채] 및 연금증권투자신탁[채권]의 영업일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합니다.
- 2) 연금증권[주식혼합] 및 연금증권투자신탁[주식]의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로 합니다.

다만, 전환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나. 전환청구의 취소(정정)

연금증권[국공채] 및 연금증권[채권]의 전환청구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하고, 연금증권[주식혼합] 및 연금증권[주식]의 전환청구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5 시 이전까지로 하되, 15 시 경과 후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 투자신탁간의 전환

전환전 투자신탁	전환후 투자신탁	전환전 투자신탁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		전환후 투자신탁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영업일
		17시 이전	17시 경과후	17시 이전	17시 경과후	
연금증권 [국공채]	타투자신탁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판매회사의 영업일
연금증권[채권]	타투자신탁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 투자신탁간의 전환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전환전 투자신탁	전환후 투자신탁	전환전 투자신탁 환매기준가격 적용일		전환후 투자신탁 매입기준가격 적용일		영업일
		15시 이전	15시 경과후	15시 이전	15시 경과후	
연금증권 [주식혼합]	타투자신탁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제4영업일	한국거래소 개장일
연금증권[주식]	타투자신탁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제4영업일	

- 투자신탁간의 전환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5 시 이전까지로 하되, 15 시 경과후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5. 계약의 이전

가. 수익자는 투자기간중 판매회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투자신탁계약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수익자가 이전청구를 하는 경우 다른 금융기관으로 투자한도 초과등의 사유로 이전청구의 접수거절 통보를 받은 경우에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이전청구에 응하지 아니합니다.

다. 수익자의 이전청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전청구의 접수통보를 받은 경우에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일괄 이전처리 합니다.

- (1) 연금증권[국공채] 및 연금증권투자신탁[채권]은 다른 금융기관의 접수통보 수령일로부터 제 3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접수통보 수령시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 3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접수통보 수령시 제 4 영업일)에 이전합니다.



(2) 연금증권[주식혼합] 및 연금증권투자신탁[주식]은 다른 금융기관의 접수통보 수령일로부터 제 2 영업일(15 시 경과 후에 접수통보 수령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 4 영업일(15 시 경과 후에 접수통보 수령시 제 4 영업일)에 이전합니다.

라. 연금증권[국공채] 및 연금증권[채권]의 이전청구 취소는 이전청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하고, 연금증권[주식혼합] 및 연금증권[주식]의 이전청구 취소는 이전청구일 당일 15 시 이전까지로 하되, 15 시 경과 후 이전청구의 취소는 이전청구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 투자신탁계약의 이전

이전청구 투자신탁	이전 청구 투자신탁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		이전 청구 투자신탁 이전처리일		영업일
	17시 이전	17시 경과후	17시 이전	17시 경과후	
연금증권[국공채]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판매회사의 영업일
연금증권[채권]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 투자신탁계약의 이전청구의 취소는 다른 금융기관의 접수통보 수령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이전청구 투자신탁	이전 청구 투자신탁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		이전 청구 투자신탁 이전처리일		영업일
	15시 이전	15시 경과후	15시 이전	15시 경과후	
연금증권 [주식혼합]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제4영업일	한국거래소의 개장일
연금증권[주식]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제4영업일	

- 투자신탁계약의 이전청구의 취소는 다른 금융기관의 접수통보 수령일 당일 15 시 이전까지로 하되, 15 시 경과후에 접수통보 수령시 이전청구의 취소는 다른 금융기관의 접수통보 수령일 당일 17 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IV. 요약 재무정보

요약재무정보	제 9 기(반기)	제 8 기	제 7 기
	20090801	20090201	20080201
I. 운용자산	5,695,336,576	5,424,297,529	270,916,922
증권	4,816,610,900	4,417,417,856	237,373,876
현금 및 예치금	260,725,181	1,006,879,673	33,543,046
기타운용자산	618,000,495		
II. 기타자산	125,523,913	62,366,521	4,006,859
자산총계	5,820,860,489	5,486,664,050	274,923,781
II. 기타부채	15,669,146	11,864,252	687,707
부채총계	15,669,146	11,864,252	687,707
I. 원본	5,764,026,398	5,159,732,736	264,409,442
II. 수익조정금	984,346	140,018,393	-1,162,241
III. 이익잉여금	40,180,599	175,048,669	10,988,873

자본총계	5,805,191,343	5,474,799,798	274,236,074
Ⅰ. 운용수익	70,349,321	193,342,274	14,195,359
이자수익	146,342,705	89,916,158	15,105,185
매매/평가차익(손)	-75,994,039	103,424,600	-910,156
기타이익	655	1,516	330
Ⅱ. 운용비용	30,168,722	18,293,605	3,206,486
관련회사보수	29,624,327	18,177,572	3,190,678
기타비용	544,395	116,033	15,808
Ⅲ. 당기 순이익	40,180,599	175,048,669	10,988,873
* 매매회전율	0	0	0
* 매매수수료	184,767	61,353	7,138